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2호 2023. 9. 20.(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83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584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585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하동군 조례 제2586호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하동군 조례 제2587호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34
○ 하동군 조례 제2588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하동군 조례 제2589호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46
○ 하동군 조례 제2590호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개정조례	50
○ 하동군 조례 제2591호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54
○ 하동군 조례 제2592호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0
○ 하동군 조례 제2593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하동군 조례 제2594호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66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92호	하동군 공무원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72
○ 하동군 훈령 제393호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77
○ 하동군 훈령 제394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100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67호	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108
○ 하동군 고시 제2023-168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고시	110
○ 하동군 고시 제2023-169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고시	111
○ 하동군 고시 제2023-17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12
○ 하동군 고시 제2023-17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114
○ 하동군 고시 제2023-173호	2023년 하반기(추가) 사망사업 사망지 지정 고시	115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244호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18
○ 하동군 공고 제2023-1262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9
○ 하동군 공고 제2023-1263호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38

일 반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232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151
○ 하동군 공고 제2023-1235호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임대인 추가모집 공고	152
○ 하동군 공고 제2023-1236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8월분)	156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칠



하동군 조례 제 2583 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2조(「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4.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내용란 중 “만 6세미만 취학전 까지”를 “6세 미만까지”로 한다.

별표1 중 5.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란 중 “만 6세미만 취학전 까지”를 “6세 미만까지”로 한다.

별표3 중 결혼장려금 지원대상란 중 “만 49세”을 “49세”으로 한다.

제3조(「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제7조(「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12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8조(「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9조(「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7세”를 “6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별표의 구분란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하고,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11조(「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제12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별표 구분란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12조(「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35세”를 “3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u>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u> 의 사람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 ----- <u>19세 이상 45세 이하</u> -----. 2. ~ 5. (현행과 같음)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사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다둥이 안전보험</td> <td>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기입 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영유아 양육수당</td> <td>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td> </tr> </tbody> </table> <p>[별표 3]</p>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기입 결정)	5. 영유아 양육수당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사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 다둥이 안전보험</td> <td>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td> <td style="text-align: center;">6세 미만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기입 결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영유아 양육수당</td> <td>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td> <td style="text-align: center;">6세 미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td> </tr> </tbody> </table> <p>[별표 3]</p>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6세 미만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기입 결정)	5. 영유아 양육수당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6세 미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기입 결정)																	
5. 영유아 양육수당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4.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6세 미만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기입 결정)																	
5. 영유아 양육수당	가. 둘째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6세 미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u>만 65세</u>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4.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65세</u> ----- -----. 3. 4. (현행과 같음)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u>만 65세</u>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3. (생 략)	제3조(정의) ----- -----. 1. ----- <u>65세</u> ----- ----- -----. 2. 3. (현행과 같음)

「하동군 은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u>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u> 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u>6세 이</u> <u>상 12세 이하</u> ----- ----- ----- -----. 2. ~ 4. (현행과 같음)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만 12세 미만</u> 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u>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u> 의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략)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 <u>12세 미만</u> ----- ----- <u>12세 이상 19세</u> <u>미만</u> -----.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② (생략)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 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4. (생략) 5. 청년위원(군에 거주하는 <u>만 19</u> <u>세 이상 만 45세 이하</u> 의 사람) 6. (생략) ③·④ (생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19세 이</u> <u>상 45세 이하</u>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경우 관람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2. (생략) 3.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65 세 이상인 자 4. ~ 6. (생략) ④ (생략)	제6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65세 ----- 4.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및 <u>7세</u> 이하 어린이</p> <p>3. ~ 10. (생략)</p> <p>1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u>만 24세</u>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6세</u> -----</p> <p>3. ~ 10. (현행과 같음)</p> <p>11. ----- ----- <u>24세</u>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p> <p>1. (생략)</p> <p>2. 삭제</p> <p>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u>만6세</u> 미만의 어린이</p> <p>4. 5. (생략)</p>	<p>제11조(관람의 금지) ----- ----- -----.</p> <p>1. (현행과 같음)</p> <p>3. ----- <u>6</u> <u>세</u> -----</p> <p>4. 5. (현행과 같음)</p>
<p>[별표]</p>	<p>[별표]</p>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u>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u>	600	400	1,400	800
<u>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u>	800	600	2,000	1,400
<u>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u>	1,000	800	2,600	2,000

-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20명 이상)	개인	단체 (20명 이상)
<u>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u>	600	400	1,400	800
<u>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u>	800	600	2,000	1,400
<u>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u>	1,000	800	2,600	2,000

-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u>8세 이상 13세 이하</u> 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u>14세 이상 19세 이하</u> 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u>고등학생, 대학생</u> 을 말한다. 7. (생략) 8. “어른”란 <u>20세</u>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제6호, 제7호 이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7세 이</u> <u>상 12세 이하</u> -----. 6. ----- <u>13세 이상 18세 이</u> <u>하</u> ----- <u>중학생, 고등학생</u> -----. 7. (현행과 같음) 8. ----- <u>19세</u> ----- -----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생 략)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1. (생 략)

1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3. (생 략)

[별표]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 개별권 : 최첨관댁을 입장하는 경우
- ※ 통합권 : 최첨관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9.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의 면제)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24세 -----

13. (현행과 같음)

[별표]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개별권		통합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1,000	500	1,400	800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1,500	1,000	2,000	1,400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	2,000	1,500	2,600	2,000

- ※ 개별권 : 최첨관댁을 입장하는 경우
- ※ 통합권 : 최첨관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환자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u>만65세</u>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2. ~ 9. (생략) ② (생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 1. ----- ----- <u>65세</u> -----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u>만 35세</u>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35세</u> ----- -----. 3.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84 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을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치단의 사용기간”을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안치단의 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를 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 중 “2년”을 “5년”으로 “보관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며, 제2항에 따른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을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로 한다.

제9조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승계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소”를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
상자

<삭 제>

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삭 제>

8.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
역명문가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
고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또
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
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

④ 봉안당 사용신고 시 부부(夫
婦)단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
료 및 관리비를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하며 재계약시부터는 부부 중
먼저 들어온 유골을 기준일로 하
여 1구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
다.

<삭 제>

⑤ 술상.양포공동묘지정비사업으
로 인해 안치되는 유골에 대해서
는 15년 동안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

<삭 제>

제7조(사용기간) ① 봉안당에 설치
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

제7조(사용기간) ① -----
---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으로 화장하였을 경우는 군수가 봉안묘(술상공동묘지내 위치)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사용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며, 제2항에 따른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

안치단의 사용기간 -----

----- .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삭 제>

③ -----

----- 5년 이내-----

-----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 -----

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봉안당의 사
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
계한 경우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
-----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
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승
계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

-----.

1. ----- 주소 또는 연락처-----
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별표]

봉안당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환급비율

1. 기본 사용료 등

구 분	사 용 료		관 리 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인 조 대리석 안치단	1구당 /30년	100,000원/군내 거주자 30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500,000원/상기자 외	1구당 /30년	150,000원
목 재 안치단	1구당 /30년	120,000원/군내 거주자 36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800,000원/상기자 외	1구당 /30년	150,000원
무연고 안치단	1구당/ 5, 10년	120,000원	1구당/ 5, 10년	150,000원

가. 군내 거주자

- 군내 거주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 군내에 10년 이상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함.

다. 무연고 안치단 사용자(사용기간)

- 무연고자, 행려사망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5년)
- 무연분묘 개장유골(10년)

2. 상세 사용료 등

가. 대상별 사용료 등

구 분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	
관내에 사설 봉안시설 및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안치하는 사용자	연 1만원	연 5천원	최대 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액 감면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자치단체 시행의 관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	전액 감면	전액 감면	10년
관내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	전액 감면	기본관리비	10년
군수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관내 무연고자 및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전액 감면	전액 감면	5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액 감면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나. 안치단 유형 관련 사용료 등

구 분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	납부	
최초 사용신고 시 부부단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 및 감경대상인 경우)	대상별 사용료 등	기본관리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료 등 기준 2명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최초 사용신고 시 부부단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 및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	20% 감경	기본관리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료 등 기준 2명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개인단에 안치된 1구와 신규 안치할 1구를 부부단 사용 시	기본사용료 또는 대상별 사용료	기본관리비	신규 사용자 1명분	개인단 안치된 유골 사용기간 기준
개인단에 안치된 2구를 부부단 사용 시	없음	없음	없음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다. 사용기간 만료 시

구 분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	납부	
사용자 유골 반환 시	없음	1년단위 관리비	개인단 부부단 모두 1구 관리비	만료일자부터 기간산정

3. 사용기간 연장(재사용) 시 사용료 등

- 개인단과 부부단 모두 1구 관리비만 납부

4. 사용료 등 환급비율

가. 사용료

경과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나. 관리비 : 환급 없음

다. 임시로 안치한 유골 반환 시 환급 없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585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군수·부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제5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1조 단서 중 “1급·2급”을 “2급”으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1급 및 2급”을 “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1급 및 2급”을 “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u>군수·부군수</u>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49조(정의) ----- -----<u>부군수</u> ----- ----- -----.</p>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u>1급 관사 : 군수 관사</u></p> <p>2. 3. (생략)</p>	<p>제50조(관사의 구분) ----- -----.</p> <p><삭제></p> <p>2. 3. (현행과 같음)</p>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u>1급·2급</u>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p>	<p>제51조(사용허가) ----- ----- -----. ----- <u>2급</u> ----- -----.</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u>1급 및 2급</u> 관사에 한정한다.)</p> <p>3. <u>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u></p>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2급</u> -----.</p> <p><삭제></p>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

-----2급 -----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86 호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물품 운영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구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삭제 2006.5.26 조1761>
-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용,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단, 조달청에서 내용연수를 고시한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4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u>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물품 운영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587 호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과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자문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

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설치 완료 후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

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조 및 13조 관련)

1. 다음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종 류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 시설물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쉼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부속시설물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견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다음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종 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3. 다음 시설물 및 공간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종 류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썸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다음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과 상호 연계 및 배치 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종 류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다음의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 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종 류
안전시설물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시설물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편의시설물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다음사항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종 류
정보디자인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브랜드 등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88 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최초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위반사항</th> <th rowspan="3">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금액 (단위:만원)</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r> <th>위반</th> <th>위반</th> <th>위반</th> </tr> </thead> <tbody> <tr> <td>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r> <td>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위반사항</th> <th rowspan="3">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금액 (단위:만원)</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r> <th>위반</th> <th>위반</th> <th>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td> <td>「지역보건법」 제34 조제1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r> <td>「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지역보건법」 제34 조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지역보건법」 제34 조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89 호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 가. 국비·도비·군비의 재원 비율
-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90 호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 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

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

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조례 제 2591 호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으로 하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예방접종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4조(비용지원)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수급자는 하동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④ 예방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도로 기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하동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상포진 지원대상 (제2조 관련)

대 상	접종개시 년도	비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024년	
65세 ~ 69세 군민(1956. ~ 1960. 12. 31. 출생자)	2025년	
65세 ~ 74세 군민(1952. ~ 1961. 12. 31. 출생자)	2026년	
65세 ~ 79세 군민(1948. ~ 1962. 12. 31. 출생자)	2027년	
65세 이상 군민(1963. 12. 31. 이전 출생자)	2028년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 (제5조 관련)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지원 대상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이고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하동군”임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임을 확인함.			
「하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담당자:		(서명)	복지담당자: (서명)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_____ - _____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증

○ 접종자 현황

접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예방접종 신청현황

발급기관		발급일	
접종기간	발급일부터 7일간 유효함		

※ 예방접종 기간이 지났을 경우 지원 불가, 하동군보건소 문의

하 동 군 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92 호

하동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하동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5. 치매환자 보호 및 치매가족 지원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7.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1. 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비용
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비용
8. 실종위험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지원 비용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업무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업무
3. 치매등록통계 업무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업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업무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업무

7.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업무
8.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
9. 치매환자 실종예방 업무
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하동군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93 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획행정위원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소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 소관에 관한 사항
-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도시국(경제기업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한 사항,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소관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 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기획행정위원회: 지역활력추진 단 소관에 관한 사항,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소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 소관에 관한 사항</u></p> <p>3. <u>산업건설위원회: 경제도시국(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한 사항,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관한 사항</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획행정위원회: 미래전략담당 관 소관에 관한 사항,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소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 소관에 관한 사항</u></p> <p>3. <u>산업건설위원회: 경제도시국(경제기업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한 사항,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관한 사항</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94 호

하동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대상 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하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되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훈령 제 392 호

하동군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하동군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39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
9조부터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
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1조제3항 관련)

공무직 정수표

(단위 : 명)

구분	총계	사무실무원	현장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비고	
			계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 작업등	현장지도, 단속, 감시					기타
총계	198	23	127	40	0	6	81	17	29	2	
본청	125	20	86	21	0	6	59	17	0	2	
미래전략담당관	2	1	1	0	0	0	1	0	0	0	
기획예산과	3	0	3	0	0	0	3	0	0	0	
행정과	8	5	2	0	0	0	2	0	0	1	
주민행복과	5	0	5	1	0	0	4	0	0	0	
가족정책과	19	1	18	0	0	0	18	0	0	0	
재정관리과	6	4	2	2	0	0	0	0	0	0	
민원과	8	7	1	0	0	0	1	0	0	0	
문화관광과	0	0	0	0	0	0	0	0	0	0	
환경보호과	9	0	9	4	0	0	5	0	0	0	
산림녹지과	10	0	10	1	0	5	4	0	0	0	
수도사업과	23	0	23	10	0	0	13	0	0	0	
시설체육과	7	0	6	3	0	0	3	0	0	1	
경제기업과	0	0	0	0	0	0	0	0	0	0	
도시과	0	0	0	0	0	0	0	0	0	0	
건축과	1	0	1	0	0	0	1	0	0	0	
건설과	18	1	0	0	0	0	0	17	0	0	

안전교통과	5	1	4	0	0	1	3	0	0	0	
해양수산과	1	0	1	0	0	0	1	0	0	0	
투자유치과	0	0	0	0	0	0	0	0	0	0	
직속기관	32	1	31	9	0	0	22	0	0	0	
보건소	15	0	15	0	0	0	15	0	0	0	
보건정책과	1	0	1	0	0	0	1	0	0	0	
건강증진과	14	0	14	0	0	0	14	0	0	0	
농업기술센터	17	1	16	9	0	0	7	0	0	0	
농축산과	1	0	1	0	0	0	1	0	0	0	
농산물유통과	4	1	3	0	0	0	3	0	0	0	
농업소득과	12	0	12	9	0	0	3	0	0	0	
의회	0	0	0	0	0	0	0	0	0	0	
읍면	41	2	10	10	0	0	0	0	29	0	
하동읍	12	0	2	2	0	0	0	0	10	0	
화개면	4	1	0	0	0	0	0	0	3	0	
약양면	3	1	0	0	0	0	0	0	2	0	
적량면	2	0	1	1	0	0	0	0	1	0	
횡천면	2	0	1	1	0	0	0	0	1	0	
고전면	1	0	0	0	0	0	0	0	1	0	
금남면	3	0	1	1	0	0	0	0	2	0	
금성면	2	0	1	1	0	0	0	0	1	0	
진교면	4	0	1	1	0	0	0	0	3	0	
양보면	2	0	1	1	0	0	0	0	1	0	
북천면	1	0	0	0	0	0	0	0	1	0	
청암면	2	0	1	1	0	0	0	0	1	0	
옥종면	3	0	1	1	0	0	0	0	2	0	

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3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
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
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5.·6.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공가) -----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5조-----

5.·6. (현행과 같음)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훈령 제 393 호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하동군”이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근로자”라고 한다) 를 말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제2호의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읍면의 장을 말한다.
7.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8.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며 업무상 지휘와 복무를 감독하는 각 부서를 말하며, 채용을 담당할 시 채용권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9. “감사부서”란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과정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1.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읍면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하동군이 정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채용권자는 공무원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하동군 공무원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공무원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하동군의 관리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 주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하동군 혹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근로자 등의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4조제2항각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2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응시자격은 업무 특성에 따라 사용부서와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부서의 의무) ① 사용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등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사용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 전에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 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는 사항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3개월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6.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 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원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사용부서를 제외한 1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하동군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7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8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의 채

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은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의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 위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채용점검위원회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체 규정을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7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4호의 서식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로 재직</u>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표 1]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훈령 제 394 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미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검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제9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 축적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p>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을 말한다)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p>※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 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 자료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 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 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검토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검토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 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소속기관(단체)		직 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타당성 검토	검토자		제공여부	여	부
	검토결과				
승인사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제공조건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직책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제19조제4항 관련)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 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소속기관(단체)		직책		
신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제 내 공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제공조건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 법령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은 <u>미리</u>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확인·검토</u>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 ----- ----- -- <u>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u> -- -----.</p> <p>② ----- -----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라 <u>확인·검토</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별지 제6호서식</u>----- -----.</p>

하동군 고시 제 2023 - 167호

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금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 사업목적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통해 금남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위치 :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1,200)
5.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개년)

6. 주요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기초생활 기반확충	금남 어울림문화센터 조성	
지역 역량강화	문화키움 프로그램	
	꿈자람 프로그램	
	어울림서포터즈 육성	
	운영주체 조직화, 역량강화	
	배후마을 전달프로그램	
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등	

7. 사업 시행자 : 하동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사업효과 : 금남면 소재지의 기초생활거점 기반정비 및 기능강화

9. 기타 문의사항

-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과 지역개발부서 (☎055-880-6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3-168호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9. 1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08
2. 허가연월일 : 2023. 9. 12.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부촌리1165, 276㎡
(인근지번 : 화개면 부촌리 29-1)
5. 점·사용의 기간 : 2023.09.12. ~ 2028.09.1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아이비디앤에스(주)

하동군 고시 제2023-169호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9. 1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00011
2. 허가연월일 : 2023. 9. 12.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탐리 865-2, 18㎡
(인근지번 : 화개면탐리 763-5)
5. 점·사용의 기간 : 2021.03.18. ~ 2026.03.17.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화개옥로타운(주)
7. 점·사용 변경사항 : 면적(12㎡ → 18㎡)

하동군 고시 제2023 - 17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13.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395-52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9.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41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395-52	20230913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184-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중마길 197	20230913	중마라는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991-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36	20230913	동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89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69	20230913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0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71	20230913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하동군 고시 제2023-17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9. 18.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41
2. 허가연월일 : 2023. 9. 18.
3. 점·사용의 목적 : 공사용 진출입로 가도설치(임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탑리 851, 600㎡ (인근 : 화개면 탑리362)
5. 점·사용의 기간 : 2023.09.18. ~ 2023.1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주)우리명가디엔씨

하동군 고시 제 2023 - 173호

2023년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3. 09. 19.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3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홈페이지 참조) 끝.

사방지 지정 조서
2023년하반기(추가)사방사업(산지사방)-하동권역

토 지 소유자	성 명 주 소	하*선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삼*봉로 4*-5*			
토 지 소 재 지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산131-1임			
조 사 년 월 일		2023년	9월	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3년	9월	일	
사방지 지정 면적		178	m ²		
사방지 지정 사유		2023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사직급: 지방녹지주서기보

성명 : 권수인 (인)

사방지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사업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26,898	178			
하동	청암	묵계	산 131-1	임	26,898	17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봉로 4*-5*	하*선	산지사방(하동청암묵계지구)

* 주의사항 : 고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성명 및 주소 ** 처리

하동군 공고 제2023-1244호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하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 및 위치(안 제2조, 제3조)

다. 운영·관리 등(안 제4조)

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5조)

마. 시설의 이용 제한(안 제6조)

바. 체험예약·체험료 등(안 제7조, 제8조)

사. 체험료의 감면·반환(안 제9조, 안 제10조)

아. 세입조치(안 제11조)

자. 준 용(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참조: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주소 : [5235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 2)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산림휴양담당)

※ 전화 055-880-2487, Fax 055-880-2469, E-mail shd0502@korea.kr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 (전화:055-880-24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위치) 치유의 숲은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86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관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00 ~ 18:00
- 2.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 10:00 ~ 17:00
- 3. 군수는 치유의 숲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화요일
- 2. 1월 1일
- 3. 설날, 추석연휴 기간
- 4.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 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
-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 4. 각종 상행위
-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 6. 시설물 이전·손상·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 7. 그 밖의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이용하는 경우
3.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0조(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료 징수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산 치 프 그 림 유 로 램	2시간 기준 (1인)	5,000원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일괄 신청하는 일행을 말한다. - 하동군민 체험료 감면은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일행이 하동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 · 수탁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소 재 지)			
	대 표 자	(남/여)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단 체 명)	(남/여)	전 화 번 호	
시 설 명				
위 · 수 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탁 조 건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치유의 숲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1262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3. 주요 내용
 - 가.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교육실시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제8조)
 - 나. 소송 등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의무화(안 제6조, 제10조)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강화
 -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근거 마련(안 제9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선발된 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및 포상에 관련한 근거 조항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하동군(참조 : 미래전략담당관, 전화 055-880-7114, FAX 055-880-7159, e-mail : bluesapay192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을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다만,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인사위원회가”를 “다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
-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p> <p>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p>
<p>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p> <p>1. 영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p>	<p>제6조(-----위원회-----) ----- --- 법 제75조의2제2항----- ----- -----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 법 제75조의2제2항--- ----- -----.</p> <p>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p>

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
정 우수공무원 선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 (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
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
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
극행정 과제발굴 등 정책의 수
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
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
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
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
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8.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
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신 설>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
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
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
에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
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
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내용, 절차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1263호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3. 주요 내용
 - 가.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나. 적극행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지원신청, 지원안내, 지원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하동군(참조 : 미래전략담당관, 전화 055-880-7114, FAX 055-880-7159, e-mail : bluesapay1921 @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 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하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령(군의 조례나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

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에 대한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

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 제1항은 제외한다)

-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 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1232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 하동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하동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3. 9. 12.
 - 제공받는 자 : (주)코나오정보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23. 9. 12. ~ 2023. 9. 27. (16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3. 9. 12.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3-1235호

서식 1 **하동 청년타운 마중물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

하동군에서는 군내 공실(空室)로 방치되어 있는 10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청년(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하동 청년타운 마중물’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대상주택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9. 12.

하 동 군 수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하동군 내 위치한 10년 이상 공동주택 중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가 가능한 주택
 - ※ 제외대상 :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소유권 및 근저당 등)
- 입주대상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함)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2,000만원)
-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이 2,200만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단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기준 완화됨(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지원조건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4년 *
 - *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 : 2년
 - 1,000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 ÷ 2,000만원) × 48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하동군 건축과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군 건축과 비치

- 신청기한 : 2023. 09. 13. ~ 10. 16.(31일간)

3.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 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하동군) → 임차인 모집 → 하동군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하동군 입회하에 건물주와 입주자 간 임대차계약 → 공동주택(10년이상) 리모델링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단,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에 한함)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
- 군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에 대하여 근저당 등을 설정함
- 임대자는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해당 임대주택을 매매할 수 없음
- 부득이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사유가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군 및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군에 보고하여야 함(미 보고 시 발생한 공실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공실의 사유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됨)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반환금 = 지원금 - {(지원금 ÷ 의무임대기간) × (의무임대기간 - 잔여임대기간)}

* 잔여임대기간은 월할로 계산하고 잔여일수는 버림

예시) 지원금 2,000만원을 받고 잔여임대기간이 23개월 20일인 경우(의무임대기간 48개월)

$$\Rightarrow 10,416,660\text{원} = [2,000\text{만원} - \{(2,000\text{만원} \div 48\text{개월}) \times (48 - 23)\}] * \text{원단위 절사}$$

- 보조사업자(임대인)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준수

5. 문의사항 : 하동군 건축과 건축행정부서(055-880-2148)

서식 2

임대신청서

하동 청년타운 마중물 임대신청서

건 물 현 황	소재지				건축년도	
	연면적(m ²)/층수	m ² /			구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 유 자	주소				
	성명			연락처	

수 선 계 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	---	--	--	--	--

임 대 희 망 사 항	임대방법			임대료		
	전세	월세	전월세	전세	월세	보증금

위와 같이 주택(10년이상)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예상 총 공사비 내역

하동군 공고 제2023 -12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부과 및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반송 우편물(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9. 12.~ 2023. 09. 27. (15일간)
3. **공고대상** : 불임참조
4. **문 의 처** : 하동군청 안전교통과(☎055-880-2395)

2023년 09월 12일

하 동 군 수

부과 상태	부과일자	반송일자	반송사유	반송우편 번호	반송주소	발송일자	등기번호
부과	2023-07-13	2023-08-04	폐문부재	523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호계천로	2023-07-13	1094861274961
부과	2023-07-13	2023-08-04	폐문부재	52318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2023-07-13	1094861273494
부과	2023-07-31	2023-08-04	이사불명	523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공설운동장로	2023-07-31	1094861276045
압류	2023-06-22	2023-07-04	폐문부재	523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023-06-22	1094861273487
압류	2023-05-15	2023-08-04	폐문부재	5235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	2023-07-17	1094861275022
압류	2023-05-15	2023-08-04	폐문부재	52335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양샘골길	2023-07-17	1094861275019
압류	2023-05-15	2023-08-04	폐문부재	5230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023-07-15	1094861275015
압류	2023-05-15	2023-08-04	폐문부재	5233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2길	2023-07-15	1094861275013
체납	2023-06-15	2023-08-04	이사불명	5233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진양로	2023-07-17	일반
체납	2023-06-15	2023-08-04	이사불명	5234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2023-07-17	일반
체납	2023-06-15	2023-08-04	이사불명	5230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023-07-17	일반
부과	2023-07-31	2023-08-07	수취인부재	523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2023-07-31	1094861276044
부과	2023-07-31	2023-08-14	폐문부재	5232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023-07-31	1094861276052
부과	2023-08-03	2023-08-10	이사불명	5235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제산업로	2023-08-03	1094861276395
부과	2023-07-31	2023-08-11	수취인불명	5230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023-07-31	1094861276036
부과	2023-07-31	2023-08-11	수취인불명	5230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의신길	2023-07-31	1094861276047
부과	2023-07-31	2023-08-11	수취인불명	5230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023-07-31	1094861276038
부과	2023-08-03	2023-08-16	폐문부재	523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023-08-03	1094861276390
부과	2023-08-03	2023-08-17	폐문부재	5232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도장골길	2023-08-03	1094861276391
부과	2023-08-03	2023-08-17	수취인불명	5232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2023-08-03	1094861276389
부과	2023-08-03	2023-08-17	폐문부재	5232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023-08-03	1094861276388
부과	2023-08-14	2023-08-24	이사불명	5234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2023-08-14	1094861277085
부과	2023-08-14	2023-08-24	이사불명	5235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제산업로	2023-08-14	1094861277075
압류	2023-06-15	2023-08-24	수취인불명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2023-08-14	1094861277106
압류	2023-06-15	2023-08-24	이사불명	52319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2023-08-14	1094861277096
부과	2023-08-14	2023-08-24	수취인불명	5233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2023-08-14	일반
부과	2023-07-17	2023-08-24	이사불명	5233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2023-08-14	일반

부과	2023-07-17	2023-08-24	수취인불명	52318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금천길	2023-08-14	일반
부과	2023-07-17	2023-08-24	수취인불명	5234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2023-08-14	일반
부과	2023-08-14	2023-08-28	폐문부재	5234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실	2023-08-14	1094861277091
부과	2023-08-14	2023-08-28	폐문부재	5235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큰동네길	2023-08-14	1094861277074
부과	2023-08-14	2023-08-28	폐문부재	5235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새들길	2023-08-14	1094861277086
부과	2023-08-14	2023-08-28	폐문부재	523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2023-08-14	1094861277087
부과	2023-08-14	2023-08-28	폐문부재	5234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2023-08-14	1094861277078
부과	2023-08-14	2023-08-28	폐문부재	52336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수척길	2023-08-14	1094861277079
압류	2023-06-15	2023-08-28	폐문부재	5232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2023-08-14	1094861277097
체납	2023-07-17	2023-08-28	수취인불명	523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2023-08-14	일반
체납	2023-07-17	2023-08-28	이사불명	5234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2023-08-14	일반
체납	2023-07-17	2023-08-28	이사불명	5234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2023-08-14	일반
압류	2023-06-15	2023-08-28	폐문부재	5235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	2023-08-14	1094861277105
압류	2023-06-15	2023-08-28	폐문부재	5235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새들길	2023-08-14	1094861277103
압류	2023-06-15	2023-08-28	폐문부재	5234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2023-08-14	1094861277098
압류	2023-06-15	2023-08-28	폐문부재	5233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진양로	2023-08-14	1094861277104
부과	2023-08-22	2023-08-31	수취인불명	5231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2023-08-22	1094861277516
부과	2023-08-22	2023-08-31	폐문부재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023-08-22	1094861277512

납부자명	우편번호	주소	부과대상/차량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등기번호
여*모	5234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13마1114	폐 문부재	2023-08-04	1094861274951
조*울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84부4483	이사불명	2023-07-31	1094861276034
(주)바른**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경남06모7952	폐 문부재	2023-08-17	1094861276385
윤*무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62라1963	수취인불명	2023-08-24	1094861277068
정*식	5235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경남80무1750	수취인부재	2023-08-30	1094861277527